

사전정보

원문정보

공개청구

공개현황

공개제도

도우미

홈 > 공개청구 > 청구신청조회

청구신청조회

공개청구

접수대기

접수

처리중

공개완료

정보목록
청구신청
청구신청조회

청구정보

수신자	[수신자] (52946)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을 동외로47번길 12 조홍래			청구서 보기
접수번호	5514828	접수일자	2019.04.17	
처리기관	고성군	통지일자	2019.04.26	

2개이상의 실과에서 시행하면 복지지원과(행복나눔과가 주가 되어 공개 바랍니다)
 2014년- 2015년도 고성군에서 시행한 사회서비스지원 사업에 대하여
 1.시행기관(예:지역자활센터 등) 2.사업명칭 3.사업시를 시행하여 수익이발생시 처리하는 방법이 나오는지침 페
 이지를 공개바랍니다.

청구내용

공개내용	<p>1. 귀 가정의 안녕을 기원합니다.</p> <p>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의거 불임과 같이 공개 결정 통지하고자 합니다. 청구내용: 사회서비스지원사업에 대하여(2014~2015)</p> <p>청구1) 시행기관 답변1) 고성지역자활센터 청구2) 사업명칭 답변2)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청구3) 사업을 시행하여 수익이 발생시 처리하는 방법이 나오는 지침 페이지를 공개바랍니다. 답변3) 2014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p.188 2015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안내 p.69</p> <p>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주민생활과(☎055-670-27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p> <hr/> <p>귀하께서 정보공개청구하신 사회서비스지원 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행기관: 고성지역자활센터 2. 사업명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3. 회계처리방법: 지침 별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보건소(☎055-670-40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hr/> <p>귀하께서 정보공개청구하신 사회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행기관: 고성지역자활센터 2. 사업명칭:장애인활동지원사업,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3. 회계처리방법: 지침 별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복지지원과(☎055-670-2535,23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

** 청구인이 유선을 통해 사회서비스지원사업 범위에 대해 서비스 시행기관이 14~15년도에 고성지역자활센터인 곳으로 정정하여 공개를 요청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비공개내용

교부형태	전자파일
교부방법	정보통신망
공개일시	2019-05-10 ※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개장소	
공개일시 지정사유	수수료납부 완료후 바로 공개

공개자료

공개자료	정보공개청구5514828(활동지원).pdf 정보공개청구5514828(노인돌봄).pdf
------	--

※ 공개자료 확장자가 csd인 경우는, csd뷰어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뷰어설치](#)

문서 정보

부서명	주민생활과
첨부파일	공개자료-사회서비스.pdf
부서명	보건소
첨부파일	2014~201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침.pdf

수수료 정보

수수료 정보	수수료(A)	운송료(B)	감면액(C)	합계(A+B-C)
	0원	0원	0원	0원

수수료 산정명세

은행명	
계좌번호	
납부기한	
납부형태	
납부일자	
납부여부	해당사항 없음

※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과명	복지지원과	문서번호	복지지원과-25253
기안자	김서영	직위/직급	주무관
검토자	천미옥	직위/직급	장애인복지담당
협조자	이혜승	직위/직급	주무관
결재권자	이연옥	직위/직급	복지지원과장
주소	52935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을 성내리 198 고성군청 행정과		
전화번호	055-670-2535	팩스번호	055-670-2609

전자우편

hera0200@korea.kr

유의사항

1.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 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 나. 수입인지(정부기관)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3. 우송의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앞면에 적힌 납부일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4.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5.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이 통지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직인 날인에 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 업무처리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점수는 수정 불가하고 의견만 수정 가능합니다. (매우 만족:5점, 만족:4점, 보통:3점, 불만족:2점, 매우 불만족:1점)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목록

출력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에 의해 공개결정 되어진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불가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보호정책 자주묻는질문 뷰어다운로드

대한민국정보공개 30116 세종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별관
문의 : 1588-2572 문의시간 : 09:00~18:00 (월~금) 대표메일 : openinfo@korea.kr

COPYRIGHT © MOIS. SOME RIGHTS RESERVED.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0846-10

2014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 지원 사업
- 가사·간병 방문 관리사 지원 사업



V

서비스 제공 및 교육



한국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1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 제공기관 운영 기준

- 바우처는 시·군·구에 등록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만 가능
 - 바우처(카드)는 동일 시·도내 시·군·구 내외 구분 없이 사용 가능
- 서비스 제공기관은 바우처 매출 및 추가 매출을 통하여 도우미 임금, 기자재 비용, 관리 비용 및 기타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 충당
- 제공기관은 서비스 가격의 75%이상을 제공인력 임금(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으로 사용
 - 관리 운영비는 서비스 단가의 25% 이내에서 관리(4대 보험 기관부담금 및 도우미 퇴직적립금 포함)
 - * (퇴직금 관련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제26조(10인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 등 참조
- 제공기관 관리자는 주 1회 이상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상황 점검
- 자활사업 등 타 사업 수행기관이 서비스 중개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활 사업 참여자 등 인건비 지원사업과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
 - 지역자활센터가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타 사업과 별도 회계 편성
 - 지역자활센터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기관의 경우 가사간병 방문관리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각 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법률 및 운영지침에 따름

□ 서비스 대상자와의 계약 및 교육

- 제공기관은 서비스 대상자와 서로 합의하에 계약을 체결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1378-10

2015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안내





3. 회계 관리

가. 원 칙

- 정부 바우처 사업의 회계는 다른 바우처 사업 또는 영리 부문 사업의 회계와 분리해 관리
* 국비·지방비 등으로 지원되는 기타 보조사업과도 분리 운영

나. 제공인력 임금

- 제공기관은 서비스 가격의 75% 이상을 제공인력 임금으로 지급
- 제공기관은 소속 제공인력에 대한 급여지급 정보를 매월(6일~25일 사이)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입력메뉴 : 험》대상자관리》제공인력급여관리》제공인력급여관리

다. 기관 관리·운영비

- 제공기관은 서비스 가격의 25%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기관 관리·운영비 사용
- 비영리기관의 경우, 바우처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당해 제공기관 자체 규정 또는 관리·감독 기관 규정 등에 따라 처리

4. 개인정보 관리 등

가. 개인정보보호 의무

1) 제공기관

- 제공기관은 업무와 관련하여 얻은 이용자 또는 제공인력의 개인 정보를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해서는 안 됨